

서울, 새로운 탄생 "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691~6/ 전송 773-4161

문서번호 치수58720-871

시행일자 1994. 7.

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부시장	시 장
보존			
하수국장	전 결		1994. 7. 19
치수과장	245	법무담당관	
기전계장	245	치수계장	수방계장
기안	최석기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 지하수 조례안 입법 예고

1.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과 합리적 보전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하수법(법률 제4599호, '94.6.11 발효)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
2.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시조례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입법예고(안) : 별첨

나. 입법예고기간 : 1994. 7.25 ~ 8.13

첨부 : 입법예고 공고(안) 1부. 끝.

원본대조필

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: 공보1담당관

제목 :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

서울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입법예고 공고(안) 2부. 끝.

치 수 과 장

1994
098

en

공 고 (안)

공고번호	1994. 7. 25	202
부서	도시계획국	수업담당관
작성	김기영	박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제정입법예고

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994년 7월 25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제 정 취 지

- 국민생활수준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과 합리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이 제정('94.6.11발효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가. 지하수에 관한 조사

- 조사업무 시행 : 지하수관련 전문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 기술사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함.
- 시장은 지하수관련 수리지질도, 수질오염분포도, 지층구조도등을 작성하여 일반인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람하여야 함.

나.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신고

-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전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.
- 신고서류는 소정의 신고양식 및 설치도 도면 작성 첨부하여야 함. 다만, 설치도는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 기술사가 작성함.

다.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

-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장치, 배수시설, 오염방지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함.
- 이에 필요한 비용 및 관리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.

라.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

- 시장은 보전구역 지정, 변경, 해제, 공고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공고 및 지적고시를 하여야 함.
- 보전구역내 행위는 시장의 허가 및 허가필증을 교부받아야 함.

마. 지하수 변동실태 조사

- 시장은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함.

바.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

-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, 전문가등으로 구성함.
- 보전구역 지정, 변경, 해제 및 행위허가에 대한 안전심의등 보전관리에 대한 사항 및 지하수 개발의 기술진흥, 합리적 관리방안을 연구함.

사.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양을 채수된 지하수 양으로 간주, 서울특별시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하도록 함.

아. 시정명령조치등

- 시장은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허위신고,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관리부실, 미신고사용, 과도한사용으로 수량고갈, 지반침하, 수질오염, 수맥변동 등을 유발시킬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
3. 의 건 제 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(참조: 치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Tel. 750-8695~6)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